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의안번호	제 31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2. 9. 20.)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상위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 자치법규에 위임형식을 규정한 제63조의5제2항의 내용이 2018.6.30.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안 제3조)
- 나.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안 제5조, 제6조)
- 라.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안 제9조)
- 바.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안 제10조)
- 사. 정책실명제 평가 관련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30일, 개정 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1)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지정하여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 공개, 자체평가 및 교육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구정운영 주요 핵심 과제 사업,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책임관인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선정,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음.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담당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나 공개하기 어려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정책실명제 사업관이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구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